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8. 9. 26.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 9.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8. 9. 16.

다. 상정일자 : 제56회 임시회 제7차 위원회('98. 9.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평국 건축과장)

가. 제안이유

'97.9.9일 건축법시행령의 시행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98.4.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건축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과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법과 시조례의 위임된 건축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 도시설계지구·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획심의 삭제.(안 제5조제1항)
- 에너지절약계획 및 토지글착 또는 옹벽설치에 관한 심의 삭제.(안 제5조제1항)
- 미관지구안의 가설건축물 중 신고대상가설건축물의 심의 삭제.(안 제5조제1항)
- 다중이용건축물로써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제획심의.(안 제5조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써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동주택(16층 이상으로써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심의.(안 제5조 제1항)
- 법 제56조제2항 삭제로 온돌의 시공자격을 정한 조문 삭제.(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1998.5.23 대통령령 제15659호)과 서울특별시건축조례(1998.4.30 시조례 제3499호)의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의 축소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법(1997.12.13 법률 제5450호) 제56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제22조의 온돌 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아파트지구·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계획 심의를 삭제하고,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로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을 심의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 신청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인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였음.
-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준의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 기준의 완화는 시건축조례 제4조에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1항제1호등의 규정에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조례안 제5조제1항제32호에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구 조례 제5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기준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제2항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조례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약칭 사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15층 이하는 심의하지 않는가?
- 답변요지(김평국 건축과장) : 2주에 한 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면 한 달이 지나가므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심의하지 않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8. 9. 26. 임종철 간사 외 1인
- 나. 수정이유 :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
- 다. 수정 주요 골자
 - 중복된 규정을 삭제함.(제5조제1항제3호)
 - 조례 제3조에서 약칭 사용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함.
(안 제5조제2항)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1998. 9. 26.

제 안 자 : 시민도시위원장

1. 수정 이유

-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

2. 수정 주요 골자

- 중복된 규정을 삭제함.(제5조제1항제3호)
- 조례 제3조에서 약칭 사용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함.(안 제5조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제2항중 "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5조(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2. <생략></p> <p>3.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p> <p>4. - 10. <생략></p> <p>11. - 27. <생략></p>	<p>제5조(기능 및 절차) ①-----</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 10. <현행과 같음></p> <p>11. - 27. <삭제></p> <p>②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서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u>건축위원회</u>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조(기능 및 절차) ①-----</p> <p>-----</p> <p>1. - 2. <개정안과 같음></p> <p>3. <삭제></p> <p>4. - 10. <개정안과 같음></p> <p>11. - 27. <개정안과 같음></p> <p>②-----</p> <p>-----</p> <p>----- <u>위원회</u> -----</p>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1998.9.

제출자 : 마포구청장

개정이유

'97.9.9일 건축법시행령의 시행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98.4.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건축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익과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법과 시조례의 위임된 건축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 도시설계지구, 아파트지구안의 건축계획심의 삭제.(안 제5조제1항).
- 에너지절약계획 및 토지굴착 또는 옹벽설치에 관한 심의 삭제.(안 제5조제1항).
- 미관지구안의 가설건축물 중 신고대상가설건축물의 심의 삭제.(안 제5조제1항).
-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의 건축계획심의.(안 제5조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16층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동주택(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미만인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심의.(안 제5조제1항).
- 법제56조 제2항 삭제로 온돌의 시공자격을 정한 조문 삭제.(안 제22조).

개정근거

- 건축법(97.12.13 법률제5450호)
- 건축법시행령(1997.9.9 대통령령 제15476호, 1998.5.23 대통령령 제15659호)
- 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19차개정 1998.4.30 제3499호)

개정조례안 : 별첨

예산조치 필요성 : 필요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에너지”를 “문화”로 하며 “조경”다음에 “역사”를 추가한다.

제5조제1항중 제11호 내지 제2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 제28호중 “법 제15조”를 “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 제29호중 “미관지구·아파트지구·도시설계지구 안의”를 “미관지구안의”로, “4층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를 “4층이하의 건축물의 건축과 미관도로변에서 가시되지 않는 기존 건축물 후면의 신고대상 중축은 제외 한다”로 하며, 제30호에 단서조항 “다만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이하“시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를 신설하고, 동항 제31호와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신청한 16층이상의 공동주택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인 16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시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사항
32. 시조례에서 자치구의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제5조제2항 및 제4항본문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5항중 “건축계획심의 신청은”을 “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 신청은”으로, “토지굴착 등의 계획에 관한”을 “토지굴착계획의 적정성에 관한”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서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계획심의신청서와 별표1의 제3호의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토지굴착 등의 계획심의 신청을 제7항의 건축계획심의 신청과 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굴착등의 계획심의 신청서와 별표1의 제4호의 도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회의록”을 “심의의결사항”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30조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표1의 제2호 본문중 “제5조제1항제28호 내지 제31호”를 “제5조제1항제28호 내지 제30호”로 하고 나목,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 차. 건축설비의 합리성
- 카. 재해예방계획의 타당성
- 타. 토지굴착등 계획의 적정성

별표1의 제3호 본문중 “제5조제1항제28호 내지 제31호”를 “제5조제1항제28호 내지 제30호”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아목”을 삭제한다.

- 사.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서(깊이 10미터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의 토지굴착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설치시에 한한다)

별표1의 제4호 본문중 “굴토계획도서”를 “토지굴착등의 계획도서”로 하며 가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 가. 토지굴착등의 계획서(토지굴착등 공사개요를 포함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종전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받은 것과 1996년 1월 5일까지 종전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 접수되어 그후 사전결정을 받은 것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주택건설 촉진법 제32조의4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동법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구성) ① ~ ②(생략)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u>에너지</u> , 교통, 조경(<u>추가</u>) 조형예술, 방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 ⑥(생략)	제4조 (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문화 ----- 역사 ----- ----- ----- ----- ④ ~ ⑥(현행과 같음)
제5조 (기능 및 절차) ①(생략) 1. ~ 10. (생략) 11. <u>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u> 12. <u>시조례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조경 완화에 관한 사항</u> 13. <u>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경 기준에 심의</u> 14. <u>시조례 제18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 완화에 관한 사항</u> 15. <u>시조례 제20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 건축허용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u> 16. <u>시조례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내의 용도제한 완화</u> 17. <u>시조례 제42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공간이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제5조 (기능 및 절차) ①(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현 행	개 정 (안)
18. 시조례 제43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구역 지정 및 높이 조정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시조례 제4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9. <삭제>
20. 시조례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 완화에 관한 사항	20. <삭제>
21. 시조례 제45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수 시설 설치 완화에 관한 사항	21. <삭제>
22. 시조례 제46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 지정 및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22. <삭제>
23. 시조례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23. <삭제>
24. 시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4. <삭제>
25. 시조례 제6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층별부분의 일조 확보 지장 여부에 관한 사항	25. <삭제>
26.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축물에 대한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26. <삭제>
27. 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2층 이상 굽토시에 첨부되는 흙막이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 및 영 제91조의3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 또는 움哭了 설치에 관한 사항	27. <삭제>
28. 미관지구안에서 별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및 영 제118조 규정에 의한 공작물	28. ----- 별 제15조제1항 -----

현 행	개 정 (안)
<p>의 설치에 관한 사항(공사용·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광고물심의를 거친 것은 제외한다)</p>	
<p><u>29. 미관지구·아파트지구·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사항(미관지구 안에서 미관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 건축하는 4층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u></p>	<p>29. <u>미관지구안의 4층이하의 건축물의 건축과 미관도로변에서 가시되지 않는 기존건축물 후면의 신고대상 축은 제외한다)</u></p>
<p>30. 영 제5조제3항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u>(단서신설)</u></p>	<p>30. <u>다만,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이하 "시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u></p>
<p><u>31. 지상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10가구 이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축계획(조경·공개공지·에너지절약·토지의 굴착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심의에 관한 사항</u></p>	<p>3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신청한 16층이상의 공동주택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인 16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사항</p>
<p><u>32.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u></p>	<p>32. 시조례에서 자치구의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u>②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할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이하 "시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 제31호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영 제5조 제3항제7호 및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u></p>	<p><u>②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할 사항으로서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u></p>

현 행	개 정 (안)
<p>③(생략)</p> <p>④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비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비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심의신청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굴착등의 계획에 관한 심의신청은 착공신고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⑤----- 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은 ----- ----- 토지굴착계획의 적정에 관한 ----- ---</p>
<p>⑥(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9조(회의록의 비치등)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⑥(현행과 같음)</p> <p>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건축 계획 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계획심의신청서와 별표1의 제3호의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⑧토지굴착 등의 계획심의 신청을 제7항의 건축계획심의 신청과 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굴착등의 계획심의 신청서와 별표1의 제4호의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2조(온돌의 시공)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온돌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회의록의 비치등) ① ----- 심의의결 사항 ----- 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 자격을 취득한자</p> <p>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 등록을 한 자로서 온돌시공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서 시행하는 온돌기능계 교육을 이수한 자.</p> <p>3.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 사업 면허자</p>	
<p>(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 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 조의 규정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또는 시공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면허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시공내용 및 하자보수 기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0조(분쟁조정 신청) 조정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u>별지 서식</u>에 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제30조(분쟁조정 신청) ----- <u>별지</u> <u>제3호서식</u> -----</p>
<p>[별표 1]</p> <p>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위원회세부 심의사항 (제5조제6항 관련)</p> <p>1. (생략) 2. <u>제5조제1항제28호 내지 제31호</u>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관한 심의 및 건축계획의 세부심의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p>	<p>[별표 1]</p> <p>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위원회세부 심의사항 (제5조제6항 관련)</p> <p>1. (현행과 같음) 2. <u>제5조제1항제28호 내지 제30호</u> -----</p>

현 행	개 정 (안)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공공시설, 공급처리시설등 도시 기반 시설과의 관계</u>	나. <u>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u>
다. ~ 자. (생략)	다. ~ 자. (현행과 같음)
자. <u>에너지절약계획등 건축설비의 합리성</u>	자. <u>건축설비의 합리성</u>
카. <u>재해예방, 토지굴착부분의 안정성</u>	카. <u>재해예방계획의 타당성</u>
<u><신설></u>	<u>타. 토지굴착등 계획의 적정성</u>
3. <u>제5조제1항제28조 내지 제31호</u>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관한 심의 및 건축계획 심의도서는 다음 각목과 같다.	3. <u>제5조제1항제28호 내지 제30호</u>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 바.(생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서 <u><단서신설></u>	사.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서(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의 토지굴착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용벽설치시에 한한다)
아. <u>에너지절약계획서</u>	아. <u><삭제></u>
자. ~ 차.(생략)	자. ~ 차.(현행과 같음)
4. 제3호 사목의 대지조성 및 <u>글토계획도서</u> 는 다음 각목과 같다.	4. ----- <u>토지굴착등의 계획도서</u> -----
가. <u>굴착계획서(글토공사개요 포함)</u>	가. <u>토지굴착등의 계획서(토지굴착등 공사개요를 포함한다)</u>
나. ~ 마. (생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

건축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지조건	위치					
	도시계획	지역:	지구:	기타:		
	대지면적			전면도로폭		
건축물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층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최고높이	
건축용도	주용도			부속용도		
건축종류 (신축, 증축, 설계변경 등)	심의종류 (건축계획, 토지글착등)			심의횟수 (1심, 재심, 보완등)		
관련기술자	기계설비	사무소명		성명		
	전기설비	사무소명		성명		
	토지글착	사무소명		성명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 제5조제7항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1. 마포구 건축조례 별표1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계획 심의도서 20부 2. 대지조성 및 토지글착계획심의도서 3부(해당사항이 있는것에 한한다) ※ 심의도서의 부수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수에 따라 조정됨					

[별지 제2호서식]

토지굴착등의 계획 심의 신청서

건축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축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토목설계자	주소			기술용역등록번호	제호
	사무소명		전화		대표
	책임기술사	(인)	전문분야		
감리자	주소				
	사무소명		전화		대표
	책임기술사	(인)	전문분야		
지질보고서작성자	주소				
	사무소명		전화		대표
	책임기술사	(인)	전문분야		
위치					
도시계획 지역: 지구: 기타:					
대지면적					
건축물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층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조
	총수	지상:	총, 지하	총	최고높이
건축용도	주용도			부속용도	
건축종별 (신축, 증축, 설계변경등)	심의종류 (건축계획, 토지굴착등)			심의횟수 (1심, 재심, 보완등)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굴착등의 계획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1. 토지굴착등의 계획서(토지굴착등 공사개요 포함) 2. 주위 시설물현황 조사서(주위건물, 도로, 구조물등) 3. 지하 매설물 현황도(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매설물) 4. 흙막이 도면(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부분 상세도 등) 5. 지반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분쟁대상 건축물 현황	위치				대지면적	
	지역		지구		지목	
	용도		구조		공사종류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지상	층
	건폐율	%	용적률	%	지하	층
①분쟁이 발생 하게 된 사항						
②당사자간 교섭경과						
③조정을 받고 자 하는 사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인)						
마포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귀하						
※ 내용이 많을 경우나 증거자료가 있으면 별지로 작성 및 첨부						